

주민청구 조례 제정 청구취지 공표

「지방자치법」 제19조 및 「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」에 의거 주민 조례 제정 청구가 있어 같은 법 제6조에 따라 청구인의 대표자 증명서를 발급하고 청구 취지를 다음과 같이 공표합니다.

2022년 1월 20일

강 원 도 의 회 의 장



1. 청구 조례명 : 강원도 신청사 건립을 위한 조례

2. 청구인의 대표자

○ 성 명 : 박*수

○ 주 소 : 강원도 원주시 명륜동

3. 대표자증명서 발급일 : 2022. 1. 19.

4. 서명요청기간 : 2022. 1. 20. ~ 8. 25.

○ 제외기간 : 대통령선거 23일간(2022. 2. 15. ~ 2022. 3. 9.)

전국동시지방선거 14일간(2022. 5. 19. ~ 2022. 6. 1.)

5. 연서 주민 수 : 6,667명 이상(18세 이상 선거권이 있는 주민 총수의 1/200이상)

※ 최대 8,888명 (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의 2)

6. 조례 제정 청구취지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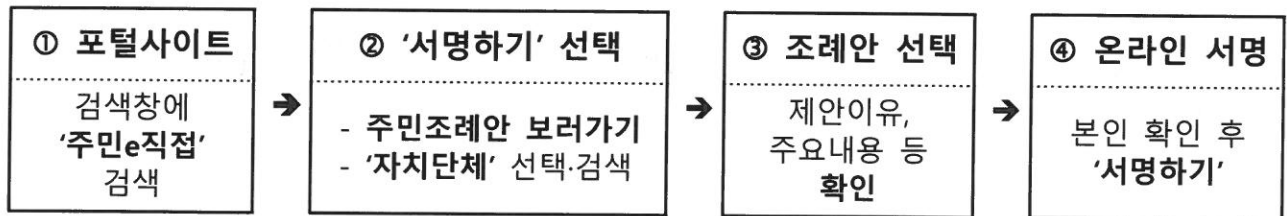
- 강원도청사를 새로 건립하는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

7. 주요 내용

- 신청사 건립추진공론화위원회 설치·운영
- 신청사 건립계획 수립 및 청사 건립에 대한 주요 정책 심의·의결

8. 전자서명절차 안내

- 전자서명시스템 인터넷주소 : 주민e직접 www.juminegov.go.kr
- PC 또는 모바일 서명 가능



- 전자서명 취소 방법
- ①~③번 과정은 동일 → ④번 과정에서 '서명취소' 버튼 선택

9. 기타 행정사항

- 본 공고(공표)와 관련하여 의문사항이 있는 경우 강원도의회 의사관실 의사팀(담당자 최승진 ☎033-249-5177)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
붙임 : 조례안 1부. 끝.